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4. 11 선고 2023가단7737 판결 [건물명도 및 월임대료]

---

## 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4. 11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주택점포 중 1층 79.38㎡를 인도하고, 2023. 6. 15.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,7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

판사 강진우

별지